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의뢰인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신우탁

건명 : 이동근 소유물(2025타경875)

번호 : 삼창제 C20252-06027 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 (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자)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삼창감정평가법인
Samchang Appraisal Co., Ltd.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94

7층

TEL.053-762-5806 / FAX.053-762-5808



(부동산)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호종 (인)

(주) 삼창 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 이현우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이억이천삼백만원정 (₩223,000,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신우탁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동근 (2025타경875)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 06. 25	2025. 06. 25	2025. 06. 26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또는 수량	종별	면적(㎡)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223,000,000
	합계					₩223,000,000
	이		하		여 백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대상물건 개요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소재 '노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노변월드시티' 4층 403호로서,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뢰된 법원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나. 대상물건은 토지의 소유권대지권과 건물이 일체로서 거래되는 구분건물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출하는 원가법의 적용은 적절하지 아니함. 또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시산가액을 산출하기에는 유사물건의 임대료 수준과 환원이율이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하여, 수익환원법의 적용 역시 적절하지 아니함. 따라서, 주된 감정평가방법 외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여,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의 적용은 생략하였음.
- 다. 위 규정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소유권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4. 그 밖의 사항

- 가. 대상물건의 위치확인인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출입구 표시부분으로 기준하였음.
- 나. 구분소유의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지사용권(대지권)은 건물의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것이 곤란하나, 귀 원 요청에 의거하여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에 부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다.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내부구조, 설비 및 마감상태는 입주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동류형 아파트의 일반적인 내부구조, 설비 및 마감상태 등을 참고하여 감정평가하였음.

5. 기준시점 등

- 가.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을 기준하여 2025년 6월 25일로 함.
- 나. 실지조사(2025년 6월 25일)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및 거래가격수준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대상물건의 확정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2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공원로 61)							
건물명 및 층·호수	노변월드시티 4층 403호							
건물의 개 황	지목	용도지역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지하/지상)		
	대	2종일주	1,479		4,510.81	지하1/지상11		
	주구조		주용도		사용승인일	단지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			2003.07.07	동수	세대수/호수
					1	40/-		
설비현황	난방설비	냉방설비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기타설비
	0	-	0	0	0	0	-	-

일련번호	층/호수	면적(㎡)			소유권 대지권 (㎡)	용도
		전유	공용	합계		
가)	4/403	84.9912	27.779	112.7702	36.975	아파트
합 계		84.9912	27.779	112.7702	36.975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가. 비교사례의 선정

1) 감정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액 (원)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	노변동 210	○/○	84.9912	공동주택 (아파트)	법원경매	2022.12.07	254,000,000
						2003.07.07	(약 2,990,000)

2)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거래시점 (계약일 기준)	거래가액(원)	출처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	노변동 210	○/○	84.9912	공동주택 (아파트)	2023.04.06	247,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03.07.07	(약 2,910,000)	
㉢	노변동 210	○/○	84.9912	공동주택 (아파트)	2025.04.30	210,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03.07.07	(약 2,47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수준

용도	거래가격수준	조사처
아파트	2,600,000원/㎡~2,700,000원/㎡ 수준	인근 부동산

4) 비교사례의 선정

감정평가대상 부동산과 위치, 층별 및 위치별 효용도 등에서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①을 비교사례로 선정함.

기호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거래시점 (계약일 기준)	거래가액(원)	출처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	노변동 210	○/○	84.9912	공동주택 (아파트)	2023.04.06	247,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03.07.07	(약 2,910,000)	

나.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점수정

■ 일련번호 가)/비교사례 ㉠

대상물건은 구분건물(공동주택(아파트))로서, 한국부동산원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대구 수성구(아파트)’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1) 시점수정치 산출 (2023.04.06~2025.06.25)

$$\frac{2025년\ 05월}{2023년\ 03월} = \frac{99.2}{108.7} \approx 0.91260$$

※ 기준시점 : 2025.06.25, 2025년 05월 지수를 적용 함.

※ 거래시점 : 2023.04.06, 2023년 03월 지수를 적용 함.

2) 시점수정치의 결정

상기의 지수로 결정하였음(0.9126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가치형성요인비교

■ 주거용

조 건	항 목	비교 사례㉠	일련번호 가)	비 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 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1.00	1.00	유사함.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 식/계단식) 등	1.00	1.00	유사함.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0	0.99	대상물건이 층별 효용 등에서 열세함.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유사함.
개 별 요 인 비 교 치		1.000	0.990	-

마. 산정단가의 결정

일련 번호	비교사례단가 (원/전유㎡)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전유면적㎡)
가)	2,910,000	1.000	0.91260	0.990	2,629,10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층/호수	전유면적 (㎡)	소유권대지권 (㎡)	전유면적당 단가 (원/㎡)	산출금액 (원)	시산가액 (원)
가)	4/403	84.9912	36.975	2,629,109	223,451,128	223,000,000
합 계		84.9912	36.975	-	-	223,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고, 인근의 감정평가전례, 거래사례, 거래가격수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와 같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끝.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조	면적 (㎡)		감정평가액(원)	비고	
					공부	사정			
1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공원로 61	210 노변월드 시티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154.9643				
				발전기실 지1층					
				펌프실 엠디에프 실					
				공동주택 (아파트)	1층	62.524			
				공동주택 (아파트)	2층 ~ 11층 각	429.332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79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84.9912	84.9912	223,000,000	비준가액
				4층 403호					
				1 소유권대지권 1,479x	36.975	36.975			
						1,479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지:	111,500,000		
						건물:	111,500,000		
	합계						₩223,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소재 '노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노변월드시티' 4층 403호로서, 부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초등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 단지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1층 중 4층 4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07.07)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화강석 치장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붙임 등 마감.
바닥 : 바닥내장재 등 마감.
창 호 : 샷시 이중창호 등임.

4. 이용상태

- 가)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개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건부지(아파트)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단지 서측으로 폭 약 12미터, 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남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고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노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고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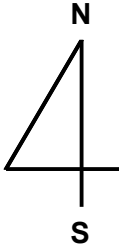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 미상임.
- 2) 기 타 : 없음.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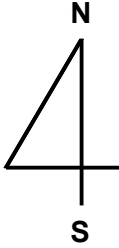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210
노변월드시티
4층 4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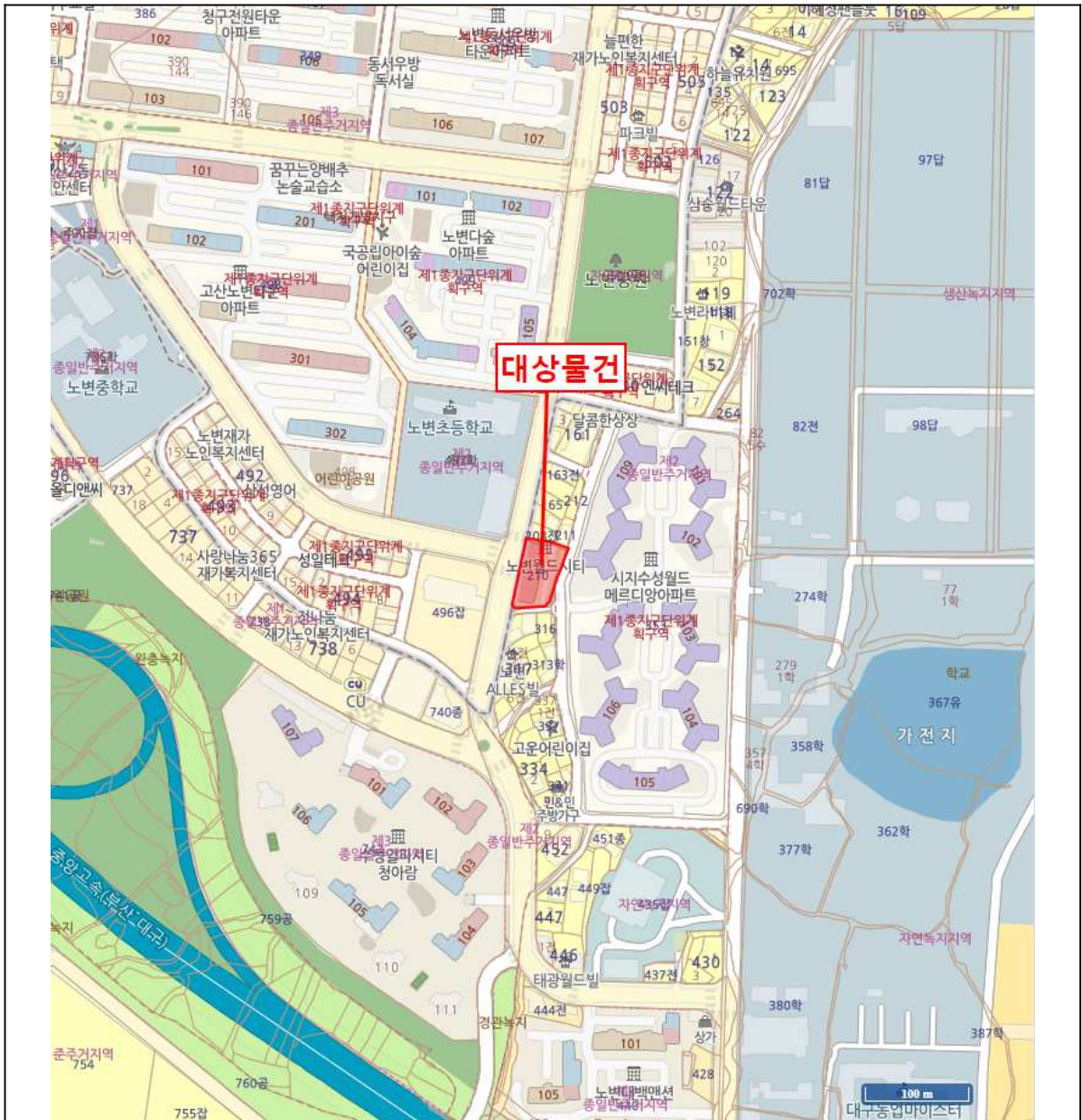


상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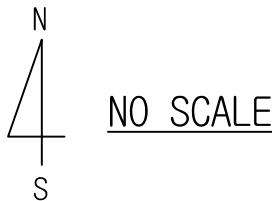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210
노변월드시티
4층 4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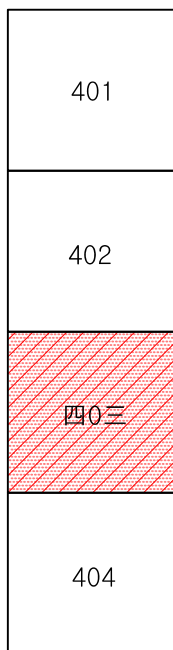


건물이용 및 임대상황도

기호 : ()



< 호 별 배 치 도 >



【 대상물건 】
(노변월드시티 4층 403호)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서측 전경]



[대상물건 남서측 전경]

사 진 용 지



[공동현관 전경]



[대상물건 전경]